총학생회선거 시행세칙

제 1 절 총 칙

이 시행세칙은 상명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58조에 의거하여 각 선거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학생자치활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절 총·부학생회장 및 단대 학생회 회장·부회장 선거

제 1 장 선거권, 피선거권

- 제 1 조 (선거권) ①총·부학생회장의 선거권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를 등록하였으며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에게 있다.
 - ②단대 학생회 회장·부회장 선거권은 위①의 해당자로서 당해 대학의 회원에게 있다.
- 제 2 조 (피선거권) ①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각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, 차기 학부(과/전공)학생회장은 총·부학생회장 피선거권이 없다.
 -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총·부학생회장 입후보자, 차기 학부(과/전공)학생회장은 단대 학생회회장 및 부회장 피선거권이 없다.
 - ③선거 시행 당해 단대 학생회 임원이 입후보할 때에는 단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된다.

제 2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- 제 3 조 (구성)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(이하 "중앙선관위"라 한다)는 당해 연도 대의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.
 - ②중앙선관위 위원장, 부위원장은 당해 연도 대의원회 의장, 부의장으로 한다.
 - ③기타 중앙선관위 위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는 위원장 권한으로 대의원 중에서 대학별 각 1명씩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.
 - ④중앙선관위는 그 역할이 끝났을 때 자동적으로 해체된다.
 - ⑤ 중앙선관위는 단대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- ⑥단대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 관위로 한다.
- 제 4 조 (위원장의 임무)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총·부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. 제 5 조 (기능) ①중앙선관위는 총·부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공정하게 선거

- 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중앙선관위는 당해 총·부학생회장 선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.
- 제 6 조 (개회 및 의결) 중앙선관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본 시행세칙 중 제33조, 제35조의 결정은 재적 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.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3 장 단대선거관리위원회

- 제 7 조 (구성) ①단대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"단대선관위"라 한다)는 당해 연도 단대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한다. 단, 선거관리의 제반 사항은 중앙선관위의 관리·감독을 받는다.
 - ②단대선관위 위원장, 부위원장은 당해 연도 단대 학생회 회장, 부회장으로 한다.
 - ③단대선관위는 그 역할이 끝났을 때 자동적으로 해체된다.
- 제 8 조 (위원장의 임무) 단대선관위 위원장은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.
- 제 9 조 (기능) ①단대선관위는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단대선관위는 당해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.
- 제 10 조 (개회 및 의결) 단대선관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관련된 시행세칙 중 제33조, 제35조의 결정은 재적 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·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4 장 선거 일정 공고 및 선거인명부 작성

- 제 11 조 (선거일 공고) ①중앙선관위와 단대선관위는 총·부학생회장 및 단대 학생회 회장·부회장 선거 일정을 투표일 30일 이전에 확정 공고한다.
 - ②총·부학생회장 및 단대 학생회 회장·부회장 선거 투표는 매년 11월 중 동시에 실시한다.
 - 단, 재선거의 경우 당해 연도 3월 중에 실시한다.
- 제 12 조 (선거인명부 작성) ①중앙선관위 및 단대선관위는 해당 선거인명부를 투표일 2일 전에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②선거인명부에는 학번,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투표자 및 선관위 확인을 표기한다.
 - ③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학내 구성원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 5 장 선거비용

- 제 13 조 (비용부담) 본 절의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회비에서 이를 부담한다.
- 제 14 조 (비용책정) ①본 절의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책정은 중앙선관위에서 정하여 학생지도위원회 승인 후 책정한다.
 - ②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비용은 각 단대 회원 수에 비례하여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③비용책정 후 입후보자의 증감에 따라 중앙선관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
- 제 15 조 (비용집행) ①총·부학생회장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선관위가, 단대 학생회회장·부회장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단대선관위가 각각 집행한다.
 - ②단대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, 단대 학생회 회장·부회장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선관위가 집행한다.

제 6 장 입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

- 제 16 조 (등록) 총·부학생회장과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입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당해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입후보 등록원(소정 양식) 1부
 - 2. 재학증명서 각 1부
 - 3.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
 - 4. 각서(소정 양식) 1부
 - 5. 본 회 회원의 추천서(소정 양식) 1부
 - 6. 선거공약 및 상징문 1부
 - 7. 입후보자 소견문 1부(한 조에 1부, A4용지 2장 내외)
 - 8. 명함판 사진 각 1매
 - 9. 참관인 명단(총·부학생회장은 8명, 단대 학생회 회장·부회장은 2명, 온라인 선거 시선거운동본부 당 2명) 1부
- 제 17 조 (입후보자의 자격요건) ①총·부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
 - 1. 4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(단, 재선거 시에는 5학기 이상 등록하고,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)
 - 2. 전체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.5 이상인 자
 - 3.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
 - 4.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 - 5. 대의원회 상임위원은 그 직을 사퇴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자
 - 6. 본 절 제1장 제2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

- ②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
- 1. 4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(단, 재선거 시에는 5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)
- 2. 전체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.5 이상인 자
- 3. 당해 대학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
- 4.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- 5. 대의원회 상임위원은 그 직을 사퇴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자
- 6. 본 절 제1장 제2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
- 제 18 조 (입후보자 등록방법) 총·부학생회장과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2인 1조가 되어 출마하여야 한다.
- 제 19 조 (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공고) 중앙선관위와 단대선관위는 투표일 15일 전까지 해당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고 학생지도위원회를 거쳐 즉시 입후보자의 명단을 공고하여야한다.
- 제 20 조 (투표권자) ①총·부학생회장 선거의 투표인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를 등록하였으며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에게 있다.
 - ②각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 투표인은 위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대학의 회원인 자로 한다.
- 제 21 조 (선거운동) 중앙선관위와 단대선관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관할한다.
 - 1.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해당 선관위에서 정한다.
 - 2. 각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일시, 장소는 선거 일정에 포함하여 공고한다(총·부학생회장 입후보자 소견 발표회는 2회,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소견 발표회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횟수는 소견문 전문을 읽는 것을 1회로 간주한다.) 단, 온라인 선거 시 소견 발표회를 온라인 게시물로 대체할 수 있다.
 - 3. 선거 벽보 및 현수막의 내용, 규격, 부수 및 게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선관위가 정한다.
 - 4. 각 입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은 금품제공, 폭행 및 협박, 유언비어 유포, 불순한 언동, 타 후보의 비방, 학생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, 기타 선관위가 금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 - 5. 교외에서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.
 - 6. 각 선관위에서 승인하지 아니한 집단적인 소견 발표 행위를 할 수 없다.
 - 7. 등록된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주재 하에 선거 관련 제반 준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.
 - 8. 온라인 선거 시 모든 게시물은 선관위의 승인 후 게시할 수 있다.

제 7 장 투·개표 및 당선인의 결정

- 제 22 조 (투표방법) 투표 방법은 보통, 직접, 비밀, 평등선거로 한다. 단, 선관위에서 온라인 선 거 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온라인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.
- 제 23 조 (선거유효) 본 절의 선거는 유권자 2/5 이상 참가 시 유효하다.
- 제 24 조 (투표시간) 본 절의 투표 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7시까지로 하고 3일 이내로 한다. 단,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선거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중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투표일을 1일 연장할 수 있다.
- 제 25 조 (투표장소) 각 선관위는 학내 승인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, 선관위원과 참관인 이 외에는 투표 장소에 상주할 수 없다.
- 제 26 조 (참관인) 투·개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후보자가 지명하는 참관인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고 투표장, 개표장, 투표함 이송 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.
- 제 27 조 (투표 요건) ①투표 시 투표권자는 신분증, 실물 학생증 및 모바일 학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인장을 지참하여 투표장 입장 시에 선거인명부와 대조 날인한다. 단, 인장의 미지참 시에는 서명으로 대체한다.
 - ②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투표권자는 투표장에 입장할 수 없으며 투표를 할 수 없다.
 - ③투표 시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투표를 할 수 없다.
- 제 28 조 (개표) 개표는 해당 선관위원이 각 투표장에서 투표가 끝나는 즉시 지정된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이송하여 봉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각 후보자의 참관인 입회하에 개표 집계한다. 단, 온라인 선거 시 개표는 지정된 장소에서 각 후보자의 참관인 입회하에 집계한다.
- 제 29 조 (무효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.
 - 1. 당해 선관위에서 제작한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
 - 2. 당해 선관위의 검인이 없는 것
 - 3. 어느 기표란에도 O표하지 않은 것
 - 4. 어느 기표란에 O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
 - 5. 2개 이상의 기표란에 O한 것
 - 6. O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식을 한 것
 - 7. 한 기표란에 중첩된 O표와 당해 선관위에서 지정한 기표 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것
- 제 30 조 (당선인 결정 및 당선인 임기) ①당해 선관위는 제23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당선 확정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.
 - ②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선거한다.
 - ③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찬·반 투표에 의해 당선 여부가 결정된다.
 - ④총·부학생회장,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그리고 각급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
- 제 31 조 (재선거) 다음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단,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1월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재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.
 - 1. 해당 선관위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경우

- 2.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경우
- 3.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
- 4. 제23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선관위가 재선거를 결정하는 경우
- 제 32 조 (보궐선거) 다음의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단, 임기 만료 150일 이상 남아 있을 경우이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.
 - 1. 학생총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어 확정되었을 경우
 - 2.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어 확정되었을 경우
 - 3. 기타 총·부학생회장 및 단대 학생회 회장·부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- 4. 보궐선거로 뽑힌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 동안 재임한다.

제 8 장 이의신청

- 제 33 조 (이의신청) ①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는 개표가 종료된 날로부터 2일 이 내에 해당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②이의신청을 할 경우 후보자는 이의서 및 관계자료를 해당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이의신청을 받은 선관위는 이의 내용을 심의·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.
 - ④선관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거심판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.
 - ⑤선거심판위원회는 제소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에 심사하고, 그 결과를 신청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⑥선거심판위원회는 당해 학생지도위원회로 한다.
- 제 34 조 (당선공고) 당해 선관위는 당선자가 확정되면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9 장 벌 칙

- 제 35 조(입후보자 등록 및 당선의 취소) 당해 선관위는 다음의 경우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거나 당선무효를 결정한다.
 - 1. 본 절 제16조 1, 4, 5호의 서류작성을 허위로 한 자
 - 2. 본 절 제21조 3, 4, 5, 6호를 위반한 자
 - 3. 기타 제반 사항을 위반한 자
- 제 36 조 (처벌) 이 시행세칙을 위반한 입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학생지도위원회 가 이를 처벌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자격을 상실한다.

제 3 절 대의원 선임 시행세칙

제 10 장 대의원회

- 제 37 조 (구성) 대의원회는 각 학부(과/전공), 학년별로 선임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- 제 38 조 (자격) 대의원 입후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
 - 1. 재학 중 전체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.5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1학년은 성적을 적용하지 않는다
 - 2.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
 - 3.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- 4.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·부회장, 집행부, 학부(과/전공) 학생회장은 겸임할 수 없다.
- 제 39 조 (선거) 대의원은 각 학부(과/전공)의 학년별 재학생의 추천으로 선출한다. 단, 복수의 추천이면 해당 학년별 재학생의 무기명 투표로 최고 득표자를 선출한다.
- 제 40 조 (선거시기) 임기 년도 전년의 11월 중에 실시한다. 단, 1학년 대의원은 당해 연도 3월 중에 실시한다.
- 제 41 조 (등록) 선출된 대의원은 당해 연도 대의원회에 등록한다.
- 제 42 조 (자격취소)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자가 학생회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
- 제 43 조 (재선)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재선한다.
- 제 44 조 (보선)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 개시 후 대의원을 사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때는 보선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. 단, 의장이 사퇴 또는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. 의장·부의장 궐위 시는 상임위원 중호선하여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.

제 11 장 대의원회 상임위원회

- 제 45 조 (구성) ①대의원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두며 상설기구로 상임위원회를 둔다.
 - ②상임위원회 위원장, 부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, 부의장으로 한다.
 - ③상임위원회는 각 대학별 재적 대의원 수의 비례제로 구성한다.
- 제 46 조 (선임관리위원회) ①대의원회 상임위원 선임관리위원회는 당해 연도 대의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.

- 제 47 조 (자격) ①의장·부의장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대의원으로 한다.
 - (단, 재선거 시 5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대의원으로 한다)
 - ②상임위원은 2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대의원으로 한다.
 - (단, 재선거 시 3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대의원으로 한다)
- 제 48 조 (선거) ①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.
 - (단, 당해 연도 상임위원은 그 직을 사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의장·부의장의 피선 거권을 가진다)
 - ②상임위원은 제40조 및 제41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을 대상으로, 각 대학 대의원이 호선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- 제 49 조 (선출방법) ①대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. 단.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한다.
 - ②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로 한다. 단,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1차에서 2차까지의 득표누계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정한다.
 - ③단일후보일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.

제 12 장 보 칙

제 50 조 (보칙)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위원회가 이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06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1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					부	칙
0	시행세칙은	2016년	03월	14일부터	시행한다.	
					부	칙
01	시행세칙은	2016년	09월	29일부터	시행한다.	
					부	칙
01	시행세칙은	2016년	12월	01일부터	시행한다.	
					브	칙
01	시행세칙은	2018년	10월	04일부터	·	7
					부	칙
01	시행세칙은	2019년	10월	02일부터	시행한다.	
					부	칙
01	시행세칙은	2020년	07월	10일부터	시행한다.	
					Ш	칙
					Τ	<u> </u>
01	시행세칙은	2021년	04월	05일부터	시행한다.	

이 시행세칙은 2022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23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23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24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